

아리아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292호 2013. 4. 3. (수)

## 【공 시】

- 정선군고시 제2013-25호 도로명주소 개별(부여·변경·폐지)고시 ..... 1

##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13-205호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
- 정선군공고 제2013-230호 「정선군 재래경감재책협의회 운영 조례」 입법예고 · 7
- 정선군공고 제2013-249호 도로의조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 15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6, FAX:560-2592)

# 공 시

정선군 고시 제2013-25호

## 도로명주소 개별(부여·변경·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9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03. 22.

### 정 선 군 수

- 도로명주소 :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마산재길 70-5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부여·변경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 :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서동로 3344-30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폐지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민원봉사과(☎560-2184)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 폐지 등
  - 도로명주소 폐지 후 건물 등의 신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가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 정선군도로명주소부여고시조서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353-7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마산재길 70-5	20090511	밭을 키우던 산에서 유래	
2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석곡리 46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소금강로 568-1	20090511	구간내 산수가 수려한 정선소금강이 소재함을 반영	
3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1120-3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운치길 36-24	20090511	법정리(운치리)명 인용	
4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1120-4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운치길 36-18	20090511	법정리(운치리)명 인용	
5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180-7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새비재길 88	20090511	고개를 이룬 산의 형상이 새가 날아가 는 모습과 같다 하여 붙여진 지명인용	
6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340-3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동강로 724-3	20090511	동강을 따라 연결된 도로	
7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659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어천길 37	20090511	물고기가 많아서 붙여진 지명인용	
8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6-34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7길 5-16	20090511	고한로의 시작지점에서 분기되는 도로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3-205호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3월 21일

정 선 군 수

**1. 개정취지**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중인 체육시설(정선종합경기장의 3개소)의 운영적자 감소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사용료 및 이용료 징수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이용료 인상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및 이용료 징수대상 체육시설을 현재 정선종합경기장과 정선국민체육센터에서 고한생활체육공원과 임계농민문화체육센터까지 확대함(안 제10조제1항)

나. 정선국민체육센터(수영장)의 이용권을 신설하고 이용료를 인상하고자 함  
(안 제10조 별표 1)

- “개인 3개월 정기이용권”과 “개인 5개월 정기이용권” 신설
- “개인 1일 이용료”와 “단체 1일 이용료” 인상
- “물품보관함 이용료” 신설

###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서면으로 우편 또는 Fax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라. 제출 및 문의전화
  - 우편제출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동계올림픽지원단(우편번호 233-804)
  - FAX제출 : 033-560-2925
  - 문의전화 : 033-560-2254

붙임 :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의 단서 중 “정선종합경기장과 정선국민체육센터에 한하여”를 “정선종합경기장과 정선국민체육센터, 고한생활체육공원, 임계농민문화체육센터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고한생활체육공원과 임계농민문화체육센터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1에 준하여 징수한다.

별표 1의 정선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및 이용료 중 수영장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임계농민문화체육센터, 고한생활체육공원의 관리·운영

## [별표 1]

## ○ 정선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및 이용료

(단위: 원)

시 설 명	이용 구분	어 른	청소년/군인	어린이/경로	비 고
수영장	개인 1개월 정기이용	52,500	41,000	30,000	
	개인 3개월 정기이용	150,000	117,000	85,500	
	개인 5개월 정기이용	236,000	185,000	135,000	
	개인 일일이용	3,500	2,500	2,000	
	단체 일일이용	3,000	2,000	1,500	20명 이상
	물품보관함 이용	5,000(1개월)			
	사용 구분	평 일	휴 일	비 고	
	체 육 행 사	150,000	200,000		
	일 반 행 사	200,000	250,000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사용료 등) ① 체육시설물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단, 사용료 및 이용료는 <u>정선종합경기장과 정선국민체육센터에 한하여</u> 적용한다.</p> <p>② (생략)</p> <p><u>&lt;신설&gt;</u></p>	<p>제10조(사용료 등) ① ----- ----- ----- <u>정선종합경기장과 정선국민체육센터, 고한생활체육공원, 임계농민문화체육센터에 대하여</u>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고한생활체육공원과 임계농민문화체육센터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1에 준하여 징수한다.</u></p>

개정 전·후 대비표(별표 1)

<개정 전>

○ 정선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및 이용료 (단위: 원)

시 설 명	이용 구분	어 른	청소년/군인	어린이/경로	비 고
수영장	개인 월 정기이용	52,500	41,000	30,000	
	개인 일일이용	2,500	2,000	1,400	
	단체 일일이용	2,000	1,300	1,000	20명 이상
	사용 구분	평 일		휴 일	비 고
	체 육 행 사	150,000		200,000	
	일 반 행 사	200,000		250,000	

<개정 후>

○ 정선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및 이용료 (단위: 원)

시 설 명	이용 구분	어 른	청소년/군인	어린이/경로	비 고
수영장	개인 1개월 정기이용	52,500	41,000	30,000	
	개인 3개월 정기이용	150,000	117,000	85,500	
	개인 5개월 정기이용	236,000	185,000	135,000	
	개인 일일이용	3,500	2,500	2,000	
	단체 일일이용	3,000	2,000	1,500	20명 이상
	물품보관함 이용	5,000(1개월)			
	사용 구분	평 일		휴 일	비 고
	체 육 행 사	150,000		200,000	
일 반 행 사	200,000		250,000		

정선군 공고 제2013 - 230호

「정선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입법예고

「정선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5일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2. 제정취지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재해경감 대책을 수립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선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정선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정선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정선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현지조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정선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정선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회의개최 및 회의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사. 정선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등록회원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아. 정선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233-804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건설방재과  
전화 033-560-2496 FAX 033-560-2591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정선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조례안 1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정선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건설방재과에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인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의 회원은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총 15명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며, 간사는 건설방재과장이 된다.

③제1항에 따라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회원 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회원 자격이 발생한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사전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 등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
2. 시설물별 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
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회의 운영)** 건설방재과에서는 제3조 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현지 조사업무)** ①협회의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협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회의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협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협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소관과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개최)** ①협회의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협회의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협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 5. 참석자 발언요지
-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등록회원의 직무)** ①제3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경비지원)** 협의회의 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1. 회의수당(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지급)
- 2. 출장여비(민간인 회원의 출장여비는 5급 상당의 공무원에 준하여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
- 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
- 4.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
- 5.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
-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 회원가입 등록신청서

회원번호		희망업무 분야	<input type="checkbox"/> 예 방	<input type="checkbox"/> 대비·대응
			<input type="checkbox"/> 복 구	<input type="checkbox"/> 정책환류
접 수	년 월 일	인 준	년	월 일

단 체 명 (기 관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직 위 및 성 명			
주소 : (      -      )	전화 : (      )		
	FAX : (      )		
E-mail :			
Homepage :			
담 당 자 직 위 및 성 명 :	연락처	사무실 :	
		Mobile :	
주요 업무분야 :			

위 단체는 정선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등록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회원가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기관) :      인

[별지 2호 서식]

제 ○ ○ - ○ ○ ○ 호

# 회 원 증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위 기관(단체)는 정선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 제3조에 따른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위한 정선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회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정선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

【붙 임 2】

**관련법령 발취**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재해 원인 조사·분석 등) ①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필요시 자연재해 발생 지역에 대하여 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할 수 있다.

② 지역본부장이 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등) ① 중앙본부장은 제9조에 따른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재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분야 전문단체들이 참여하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정선군공고 제2013- 249호

## 도로의노선지정(변경)에관한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 4. 3.

## 정 선 군 수

## 1. 노선지정(변경)내용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폐지·변경)사유
				기점	종점			도로 너비 (m)	포장 너비 (m)	
신동읍	면도	마차~운치	신동 103호	가사리 185-1	운치리 705-2	11 (0.22)	가사리 412	4.0	4.0	도 로 확·포장

2.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건설방재과)

3. 사업시행기간 : 2013. 4. ~ 2013. 12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물건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5. 설계도서, 자금계획, 지형도면 : 실음생략

○ 설계도서, 자금계획, 지형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 공람장소 : 정선군청 건설방재과

- 도로의 노선지정도 및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건설방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노 선 지 정 도

## 위 성 사 진

